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"목책"을 "울타리"로, "부숙도(腐熟度)"를 "부숙도(썩혀서 익히는 정도)"로 바꾸는 등 현행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전문용어, 외국어,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(倂記)하는 등의 방법으로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 37개 부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,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. <농림축산식품부 제공>

◉국토교통부령 제649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9년 8월 26일

국토교통부장관 인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2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것

가.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

나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

다.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
1)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

2)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중 운전경력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운전경력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력임을 명확히 하고,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계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군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을 갖춘 것으로 하려는 것임.

<국토교통부 제공>